

2023년도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31.(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민아(분과위원장), 김성주, 김정숙, 손수호,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6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63건(안전번호 제2023-213391호~215253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213391호~213394호는 ○○○○ 블로그에 만화의 일부를 게시한 사안으로 안전번호 제2023-213391호는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여 안전번호 제2023-213392호~213394호는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13395호~213399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안전번호 제2023-213400호~213418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13419호~213433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3434호~213461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68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6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민아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김준근 주임: 정식 서비스 되는 이미지에서 1/2~1/3 정도의 컷을 게시하고 있음.
- A 위원: 원작과 비교시 적은 분량 아닌가?
- 김준근 주임: 그러함. 전체 분량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리뷰 게시물 같은 경우 다른 분과에도 계속 올라오는데, 리뷰라고 하고 만화 이미지를 다 올리는 경우도 있음.
- B 위원: 이견이 있을만한 안전임. 저는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안전번호 제2023-213392호~213394호는 이미지가 움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불법 복제가 전제되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음. 다만 삭제 수준까지는 아니고 경고 조치 정도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향후에 이런 식으로 게시하면 안된다는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D 위원: B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비록 그 양이 합법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양이 적은가 많은가를 떠나서 그대로 사용했다면 한번 짚은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저도 검토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를 보면 애니메이션 관련 리뷰를 꾸준히 올리는 헤비 블로거로 보임. 전체 게시물 수가 6,900개를 넘고 전문성이 있는 블로그라서 광고도 붙은 것 같음.
- E 위원: 이런 불법 복제물이 저작재산권 내지 인격권 등을 침해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재 할 수 있겠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본을 더 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임. 저는 안전번호 제2023-213391호~213394호 모두 부결 의견임.

- D 위원: 홍보 효과, 바이럴 효과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은 부수적인 요소이며 홍보 효과가 있으니깐 침해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음.
- E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다만 저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규모, 그 다음에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를 봤을 때, 심의대상 안전이 누구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임. 해당 게시물을 통해서 콘텐츠가 더 확산되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임.
- 김준근 주임: 안전번호 제2023-213391호는 단행본 이미지를, 안전번호 제2023-213392호~213394호는 게시물별로 최신 회차 에피소드 20컷 이상을 게시하였음.
- D 위원: 스포일러 수준이면 거의 전체를 압축해서 게시한 것 아닌가?
- 김준근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회차 전체를 보지 않고서는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게시하였음.
- B 위원: 이런 리뷰들을 통해서 홍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 블로그로 보이는 면도 있음. 그렇게 때문에 삭제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경고 정도는 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라는 수준의 메시지를 게시자에게 전달자는 것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저도 E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지만, 다른 세분의 위원님이 검토의견대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심의대상 안전은 원안대로 안전번호

제2023-213391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13392호~213394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13395호~21339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최신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배포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13395호~213399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13395호~21339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13400호~21341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13400호~21341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13419호~21343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13419호~21343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13419호~21343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13419호~213433호는 게시

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13434호~21346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213434호~21346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213434호~21346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13462호~21525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만화/웹툰, 방송, 출판/어문, 일반영상, 기타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적: 칼의 소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14614호(‘도적: 칼의 소리’)는 2023.09.22. 공개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700포인트에 판매중임.

(‘악인전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14646호(‘악인전기’)는 2023.10.14. 부터 방영중인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330포인트에 판매중임.

(‘유괴의 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14650호(‘유괴의 날’)는 2023.10.25.부터 방영중인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90포인트에 배포중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213462호~21525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213462호~21525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213391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3392호~213394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3-213395호~213399호, 제2023-213400호~213418호, 제2023-213419호~213433호, 제2023-213434호~213461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13462호~21525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이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7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7.

분과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